

(재)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보수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재단법인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(이하 “재단“이라 한다)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직원의 보수는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.

제3조(최저임금 상한) 직원의 임금 수준은 매년 고시되는 최저 임금을 상회하고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는 수준에서 결정하되, 재단의 지불능력 범위 내에서 동일업종, 동일 규모의 임금 수준을 고려해서 결정한다.

제4조(용어의 정의) ① 이 규정에서 적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보수”라 함은 연봉 및 수당, 복리후생비를 말한다.
 2. “연봉”이라 함은 1년을 단위로 하여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.
 3. “월봉”이라 함은 연봉을 12분의 1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.
 4. “수당”이라 함은 연차, 시간외, 야간·휴일근무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그 밖의 수당을 말한다.
 5. “평균임금”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그 임직원에게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.
- ② 제2항의 보수기준을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다음의 사람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보수로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1. 외국어 회화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자
 2. 세계유산 관련분야 등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- ③ 제3항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는 객관적으로 능력이 인정되어야 하며 경력자인 경우 전 근무지의 보수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.

제5조(수당의 지급) ① 재단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- ② 재단 직원에 대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특별한 성과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특별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.
- ③ 재단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파견 또는 1개월 이상 합동근무 하는 공무원과 파견임직원에 대해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④ 재단 특성상 지자체에서 파견 또는 1개월 이상 합동근무 하는 공무원과 파견임

직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⑤ 각 호의 수당 등에 대한 지급기준 및 방법 등은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하되 그 외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적용한다.

제6조(보수지급일) 직원의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. 다만,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.

제7조(보수계산) ① 보수는 신규채용 또는 감봉,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그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

② 퇴직하거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달의 보수를 전액 지급한다. 다만, 재직시의 근무실적이 불량하다고 인정된 자와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하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.

③ 퇴직하거나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재단의 업무수행 상 필요에 의하여 계속 근무하게 한 때에는 그 근무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 다만, 그 업무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8조(겸직의 보수) 직원이 겸직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 중 보수가 많은 직위의 보수를 지급한다.

제9조(직위해제기간중의 보수)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. 다만,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되거나 법원에서 무죄의 선고가 있을 때에는 이미 지급된 금액과 지급하여야 할 보수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.

제10조(다른 법령의 준용)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한다.

제11조(시행내규)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내규로 정할 수 있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